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반 도 체 방 산 과

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

구 미 시

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6. 10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지역의 방위산업 네트워킹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 방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함

나.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 :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1) 추진근거

가)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

나)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제4조, 제6조

다)「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

라)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

2) 필요성 : 네트워크 지원사업 진행 경험과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네트워킹, 사업관리 등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

다. 위탁사무 :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운영·집행

1) 구미방위산업 기업협의회 운영지원

2) 「방산혁신기업」컨설팅, 세미나, 방위산업 포럼 등 지역 방산기업 경쟁력 제고

3) 방산 전시회 공동참가·참관 지원 등 방산 홍보 강화 등

라.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
마. 위탁기간 : 2027. 1. 1. ~ 2027. 12. 31.

바. 소요예산(산출근거) : 180백만원(시비)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간접비	사업비	비고
180	15	8.5	156.5	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 2026년 구미시 첨단산업국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('26.09.21)

아.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)

3. 부서의견

○ 구미방위산업 기업협의회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 방산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므로,

○ 2027년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가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나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다) 「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라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2027년도 예산편성

다.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

: 적정(2026년 구미시 첨단산업국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)

라. 성과보고서 및 성과평가 결과, 자체 감사결과

관계법령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

제4조(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·안정성

3. 경제적 효율성

4.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7. 책임행정의 보장성

제6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~6. 생략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

2. 기존의 위탁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% 이상 증감하는 경우

□「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방위산업 육성사업) 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방위산업 중소·벤처기업 육성 사업

2. 방위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

3. 방위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

4. 방위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

5. 산·학·연·관·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

6.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국·공립연구기관

2. 정부 또는 구미시가 출자·출연한 기관

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설립된 대학

4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

5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

6.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

□ **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**

제6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위탁 시 사업운영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예상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인건비는 구미시 기업지원사업 운영 요령 기준 현금사업비의 20% 이내로 산정

나. 사업의 연속성과 사업 대상의 규모(구미방위산업 기업협의회) 유지를 감안하여 정액 편성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○ 인건비	15	15	15	15	15	75
	○ 간접비	8.5	8.5	8.5	8.5	8.5	42.5
	○ 사업비	156.5	156.5	156.5	156.5	156.5	782.5
	계	180	180	180	180	180	9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 비	-	-	-	-	-	-
도 비	-	-	-	-	-	-
시 비	180	180	180	180	180	900
민 간	-	-	-	-	-	-
기 타	-	-	-	-	-	-
합 계	180	180	180	180	180	900

5. 부대의견 : 위탁금의 상세내역은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정 가능

6. 작성자 : 반도체방산과 방위산업팀 김영빈(☎480-6044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구 분		금액 (천원)	산 출 근 거	
합 계		180,000		
사업비	행사운영비	51,000	·「방산 네트워킹 DAY」 운영 10,000,000원×4회=40,000,000원	40,000천원
			·기업협의회 운영지원 7,000,000원×1식=7,000,000원	7,000천원
			·기술교류회, 체계기업 탐방 2,000,000원×2회=4,000,000원	4,000천원
	용역비	85,000	·방위산업 포럼 70,000,000원×1식=70,000,000원	70,000천원
			·사업화 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 3,000,000원×5개사=15,000,000원	15,000천원
	인쇄비	6,000	·「방산혁신기업」 PPT 디자인 지원 2,000,000원×3개사=6,000,000원	6,000천원
	전문가 활용비	3,000	·전문가 수당 500,000원×6회=3,000,000원	3,000천원
	인건비	15,000	·연구원 인건비(12개월 * 참여율(19%)) 15,000,000원×1명=15,000,000원	15,000천원
	운영비	20,000	·연구수당(인건비의 16% 이내, 자부담 포함) 9,800,000원	9,800천원
			·간접비(사업비 5% 이내) 8,500,000원	8,500천원
			·회의비 100,000원×10회=1,000,000원	1,000천원
			·출장비 100,000원×7회=700,000원	700천원

성과보고서

1. 사업기간 : 2026. 2. ~ 2026. 12.

2. 사 업 비 : 230백만원(시 180, 자부담 50)

3. 사업내용 : 지역 방위산업 네트워킹 및 중소기업 성장지원 등 방위산업 생태계 활성화

○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운영 전반

- 구미 방위산업 기업협의회 운영지원
- 「방산혁신기업」컨설팅, 세미나, 방위산업 포럼 등 지역 방산기업 경쟁력 제고
- 방산 전시회 공동참가·참관 지원 등 방산 홍보 강화 등

4. 추진현황(2026년)

○ 「국방과사람들」 초청 세미나 개최 : 2026. 3. 11.

○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 구미시 공동관 운영 : 2026. 4. 1. ~ 3.

○ 2026 GDIP 포럼 착수보고회 : 2026. 8. 6.

성과평가 결과서

1. 평가개요

○ 평가기간 : 2026. 9. 3.(목)

○ 대　　상 :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

○ 위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
○ 대상기간 : 2026. 2. ~ 평가일 현재

○ 평가내용 :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수행 전반 및 사업 추진 성과평가

○ 평 가 자 : 2명(세무6급 신규식, 행정9급 김영빈)

○ 평가방법 : 성과평가 총괄표에 따른 부서 자체평가, 방문점검 및 평가

○ 평가항목 : 성과평가 총괄표 2개 분야 6개 항목

2. 평가결과 및 총평

○ 평가결과

총점 (100)	공통분야(40)			개별분야(60)		
	사업계획 (20)	예산관리 (10)	성과관리 (10)	사업관리 (30)	사업추진 (15)	수탁기관 전문성 (15)
85	15	8	7	28	13	14

○ 총　　평

-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방산분야 전문인력과 기업지원 네트워크 기반으로 2023년부터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 왔음.

 지도·점검 결과 중대한 문제점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확인되어, 축적된 사업경험과 수행역량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위탁사업의 효율적·안정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2026년도 공공위탁사무 감사 결과

1. 감사개요

○ 부 서 명 : 반도체방산과

○ 위탁사무 :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

○ 감사기간 : 2026. 9. 28.(월)

○ 감사범위 : 위탁사무 관리·운영 실태 전반

○ 감 사 반 : 반도체방산과 세무6급 신규식, 행정9급 김영빈

○ 감사방법 : 종합감사, 실지감사(서류 및 시설 확인 현지방문 점검)

2. 감사결과

○ 지적사항 : 0건

○ 처분내용 : 시정 0건, 주의 0건

감사내용 (검토 또는 조치사항)	조치계획(의견)	비고
공공위탁사무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위·수탁 협약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, 위탁금 집행, 사업추진 현황 등 점검한 결과,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.	-	

소 관 부 서		반도체방산과
입	과 장	시 병 연
안	팀 장	신 규 식
자	담 당 자	김 영 빈 (480-6044)